

의안번호	제 149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제 회)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4. 2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제출년월일 : 2000. 4. 24.
제출자 : 서산시장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로 부터 2000. 3. 13일 1국 1과를 증설할 수 있는 정원 8명이 승인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15명”을 “8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00명”을 “809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 1중 정원의 총수 “871명”을 “8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56명”을 “865명”으로 하며, 동조 표 2중 정원의 총수 “843명”을 “85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8명”을 “837명”으로 함.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현황

직급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승인	9명	1	1	2	2	2	1
직렬		행	행·토·건	행·토1 행·건1			사회복지

※ 871명 ⇒ 880명(증 9명)

○ 정원조정현황

구분	합계	정무	일 반 직							지도	별정	기능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871	1	663	5	40	149	240	178	51	33	20	154
조정	880	1	672	6	41	151	242	180	52	33	20	154
증감	+9	·	+9	+1	+1	+2	+2	+2	+1	·	·	·

○ 『사회복지』직 정·현원 현황

(단 : 명)

구분 \ 직급	계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5	6	5	4	
현 원	14	5	6	3	
결 원	△1	△1	+1	△1	

○ 생활보호대상 가구 및 대상자수

(단 : 가구, 명)

구분	계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부춘	동문	활성	수석	석남
생보 가구	2,350	90	112	169	91	92	95	139	168	211	142	205	179	130	374	153
생보 자	5,473	183	388	435	191	196	205	309	382	483	314	507	383	258	900	339

○ 승인정원 배치

《 1국 1과 승인정원 : 8명 》

- 신설되는 국·과의 사무량을 판단하여 적의 조정배치

《 사회복지 정원승인 : 1명 》

- 생활보호대상가구수를 우선 고려하고,
- 생보대상 및 저소득층 가구의 증감 추세등을 감안하여

⇒ 승인된 사회복지 9급 정원 1명을 수석동에 배치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815명”을 “824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800명”을 “809명”으로 한다.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표 1의 정원의 총수 및 1.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8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65명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표 2의 정원의 총수 및 1.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5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37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815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00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824명</u>----- -----</p> <p>1. ----- : <u>809명</u></p> <p>2. (현행과 같음)</p>																		
<p>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조례 제305호) 부칙</p> <p>제2조(정수에 관한 적용례)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p>		<p>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조례 제305호) 부칙</p> <p>제2조(정수에 관한 적용례)----- ----- ----- ----- -----</p>																		
<p>[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정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871명</u></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856명</u></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정원	정원의 총수	<u>871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856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생략)	<p>[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정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880명</u></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865명</u></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분	정원	정원의 총수	<u>880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865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구분	정원																			
정원의 총수	<u>871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856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생략)																			
구분	정원																			
정원의 총수	<u>880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865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p>[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정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843명</u></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828명</u></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정원	정원의 총수	<u>843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828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생략)	<p>[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정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852명</u></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837명</u></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분	정원	정원의 총수	<u>852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837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구분	정원																			
정원의 총수	<u>843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828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생략)																			
구분	정원																			
정원의 총수	<u>852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837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정원조례개정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보좌기관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3.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2관련)

구분	실장(국장급)· 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 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인구 3만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제15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직급별 정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정원감축을 제외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 책정의 적정성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이상·연구관·지도관지방공무원, 소방정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4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4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2. 광역시·도·시·군·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령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5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 ①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